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426

발의연월일: 2025. 2. 26.

발 의 자:김영진·허 영·강유정

임호선 · 서삼석 · 안도걸

소병훈 • 이병진 • 유후덕

박지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 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·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은 취득가액의 103분의 3, 중고자동차는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이러한 특례 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됨.

그런데 지속되는 경기 침체를 고려할 때 영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일 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08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각각 "2027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108조(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제108조(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 례)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 례) ① -----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, 중고자동차를 2 12월 31일-----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027년 12월 31일-----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 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 산한 금액을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 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 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. 1. • 2. (생략)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생 략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